FINAL 소방장 모의고사 법령Ⅱ 및 다중이용업소법 정오표(2021.8.1.)

페이지(p)	오(수정 전)	정(수정 후)
p 52 8번 문제 ②	작업장 주면	작업장 주변
p 76 14번 문제 보기	출입이 가능한 것 중	출입이 가능한 것 중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은 전력구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,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외의 것은
p 76 14번	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(㉣) 이상	삭제
p 76 14번	①,②,③,④의 ㉣	삭제
p 79 21번 ④	지방위원회	중앙위원회
p 101 24번 문제 ④	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이	관계인이
p 108 24번 문제 ②	인간지	일간지
p 142 24번 문제 ④ 대체		④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·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p 236 25번 해설 ④	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
p 250 8번 해설 ㉢ 대체		ㄷ, 맞음,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이 있다.
p 255 21번 해설 ④ 대체		④ 틀림,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. 중앙위원회는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p 350 24번 해설 ④ 대체		④ 맞음,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(미승인 소방용품 판매의 제한)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·수입자·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·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(법 제36조 제7항)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(7.6.) 시행 7.13

1. 제9조의6 신설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)

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”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·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.

②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·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다.

2. 제15조의2 신설(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)

1)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“심신상실자,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
1. 심신상실자
2. 알코올·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
3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, 조현병·조현정동장애·양극성 정동장애(조울병)·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, 뇌전증으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

2)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및 제4항

③ 동의서(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)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소방청장은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영 제15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(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)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3. 제18조의2 신설(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)

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
3.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

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**30일 이내**에 소방청, 시·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4. 과태료 부과의 개별 기준(별표 6 제2호거목 신설)

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 발생 사실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.